

MAS 총액계약 등 물품구매 행정규칙 주요 개정안

(‘21.11.16. 구매총괄과)

< 다수공급자계약 >

1. 가격·상품관리 및 경쟁성 강화

○ 5년간 실적없는 품목 일괄 삭제

- * (현행) 과거 3년 실적없는 경우 1년계약 배제(계약기간 1.5년 미만 제외)
(개선) 현행유지하되 과거 5년 실적없는 경우 이후계약 배제

○ 중기간경쟁제품의 단가인하 하한율(10%) 폐지하고

2단계경쟁 시 모든물품에 대한 제안하한율(90%) 신설

- * 최초 계약단가 기준 모든 제품(중기간 포함)에 대해 인하하한율 제한 폐지
- * (현행) 2단계경쟁 시 중기간경쟁제품만 제안하한율(90%) → (개선) 모든 제품 확대

○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 강화

- * (현행) 1차(1월), 2차(3월), 3차(6월)
(개선) 1차(1월), 2차(3월), 3차이상(차수당 6월, 차수당 1년 차기계약 배제)

○ 엄격한 우대가격 유지의무 예외요건 완화

- * (현행) ①시장가격차이 3%이내, ②총위반기간 15일이내, ③인하횟수 2회이내 모두충족
(개선) ②번삭제, ①시장가격차이 3%이내, ③우대가격유지의무 최초적발 시 모두충족

2. 조달기업 부담 완화

○ 과도하게 작용했던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개선

- * (현행) 계약상대자 대상, 경결함부터 감점 → (개선) 세부품명기준, 감점기준 완화

○ 불공정 행위 이력평가제도 부담완화

- * (현행) 제재 등 조치일 기준 2년 → (개선안) 제재조치 종료 후 1년

○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

- * 선택평가항목 5점만점 중 지역업체면 5점, 아닐 경우 (현행)2점 → (개선)1점

○ 혁신제품에 대한 실적요건 면제

* 협상품목선정 시 창업 2년 이내, 우수조달물품 + '혁신제품' 실적면제요건 추가

○ 경미한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

* 위반납품 없이 일시적 자격상실, 직생연관취소 등 향후 이행가능성 판단하여 제재X

3.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 제고

○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 및 회피기준 명확화

* 1) (현행) 구매예산 → (개선) 수요기관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
2) 시스템상 차단기준(30일)이 넘더라도 회피금지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

○ 2단계 경쟁 구매 예산 합산기준 현실화

* (현행) '세목' 기준의 경우 통합구매 → (개선) 2단계경쟁 가능한 '세목'이하 허용

○ 5천만원 ~ 1억원 사이 비교구매제도 서비스 제공

* 5천만원~1억원에 대해 2단계경쟁(제안요청) 대신 3개사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비교구매제도 도입,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평가항목을 기초로 비교 후 구매

○ 다수 세부품명, 다수 규격 경쟁성립 불가할 경우 개별구매 허용

* (예시1) 동일사업(A품명 9천만원, B품명 2천만원) 구매 시 두 품명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구매 불가 → 예외(2단계경쟁 불가 등)적으로 품명별 개별구매 허용
* (예시2) 동일품명 내 다수규격(a규격 7천만원, b규격 6천만원) 구매 시 두 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2단계경쟁 불가 → 규격별 개별구매 허용방안도 검토 중

○ 2단계 경쟁 표준평가방식 4종에서 2종으로 축소·개선

* (현행) 표준평가방식 1~4종 → (개선) 대부분 이용하는 표준평가방식2(가격위주) 유지 + 종합평가방식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조합에 품질 위주 구성

○ MAS 할인행사 운영제도 현실화

* 계약기간 내 최대 7회 → 6회(1년 이내 최대 3→2회, 2년 이내 최대 5→4회)

○ 3종의 물품 MAS 관련규정을 2종으로 통폐합

* 1)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폐지,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2종 운영

< 총액계약제도 >

- 「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」 적정대가 보장¹⁾을 위한 낙찰하한율 조정 검토²⁾ 추진 (적격심사)
 - 1) 물품 적격심사의 중소기업 참여비중(제조입찰 85.9%, 구매입찰 97.8%)을 감안하여, 물품구매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회용 현실화를 위해 낙찰하한율 개선 필요
 - 2) 동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(계약정책과)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, 현재 관련 내용을 건의하여 검토 중
- 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한 소기업·소상공인 기업 신인도 가점 부활¹⁾로 약자기업 지원 확대²⁾ (계약이행능력심사)
 - 1) 입찰참가자격과 중복되는 중소기업(중소기업·소기업·소상공인 등), 기술인증의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제외('19.12.개정, '20.04.시행)
 - 2)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에는 입찰참가자격과 관계없이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부여되는 기업신인도 가점 인정
- 적격심사 서류제출기한을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서류제출 마감기한 확대 (적격심사, 계약이행능력심사)
 - * (현행) 고시금액 미만 3일, 고시금액 이상은 5일 → 금액 구간에 관계없이 5일로 확대
-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시 유해물질 적용범위 확대¹⁾ 및 거래정지 적용기준 강화²⁾ (품질관리 특수조건)
 - 1)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시 유해물질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, 고시, 공고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까지 확대
 - 2) 종전계약에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당해계약에서도 그 사유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